

압수물가환부신청서

※ ☐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뒤쪽의 이의 신청 안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
	전화번호/팩스번호	압수물에 대한 관계 [] 제출인 [] 피해자 [] 소유자 [] 기타()	

사건번호	20	년	형제	호
------	----	---	----	---

피 의 자

신청사유

아래 압수물을 가환부 받을 경우, 훼손·폐기·양도·질권설정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,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하고, 귀 청으로부터 제출명령을 받을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하겠으니, 가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품 명	수 량	품 명	수 량

년	월	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

○○ 지방공소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	없 음
담당자확인	압제번호	증제번호	
주임검사 결정	검사		
가	부	불허이유	

이의 신청 안내

- 검사의 가환부 불허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압수물 가환부 신청인은 검사의 소속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**압수물 가환부 결정**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(「형사소송법」 제218조의2).
- 또한, 압수물 가환부 신청인은 검사의 가환부 불허통지(고지)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의 소속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위 불허결정(처분)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**준항고**(가환부불허결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)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(「형사소송법」 제417조).

○○ 지방공소청 ○○과

전화

팩스